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65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지정 대상 확대에 따른 추진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신청대상 및 현장평가시 확인 대상 명확화
(안 제2조제1호가목, 제9조)

-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으로 한정
- 현장평가시 확인 대상을 ‘적용 현장’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으로 구체화

나. 기타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신청 자격 및 사전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9조 제8항 및 제9항)

- 기타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사전평가의 주체, 절차를 명확히 함

다.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추가등록 관련 절차 및 방법 명확화(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라. 혁신제품 지정취소 사유 관련 조항 반영(안 제15조)

- 혁신제품 지정취소는 조달청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조달청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하므로, 관련 사유를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현행		▶	변경	
1.서류 위조·변조 등	제1호		1.최초 지정기준 미달	제1호
2.중대한 품질상의 결함	제2호		2.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2호
3.납품 의무 위반, 사후 문제	제3호		3.그 밖에 공정한 계약이행 우려	제3호
4.기타 수요기관의 업무 지장 초래	제4호		4. (삭제)	

-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마.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the_nike@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3) 팩스 : (044) 201-55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전화 : (044) 201-47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